

② 확인 검사 종류

〈표 3-6〉 확인 검사 종류

구분	내용	검사종류
1. 최초확인검사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최초 설치 전 실시	현장검사
2. 정기확인검사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에 1회 실시	현장검사
3. 재확인검사	부적합판정, 사고발생, 3개월 이상 운행정지 시설	현장검사
4. 서류확인검사	위험요소가 매우 작아 서류로만 확인	서류검사

※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제9,10,11,12,13호

8) 검사기준

(1) 허가전 안전성검사(「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별표1])

①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유기기구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함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은 해당 기구에 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작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적용에서 제외함

② 공통기준 및 구조계산·설계 기준

- 허가전 안전성검사 공통기준으로 승용물,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운전실, 점검로 및 점검사다리, 출입문, 옥내통로, 계단, 안전유도표시, 안전점검판, 풍속계, 부하시험 등을 규정함
- 구조계산 및 설계 기준으로 하중, 안전계수 및 허용응력, 피로한도, 안전성평가 항목을 규정함

③ 완성검사기준

-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허가전 안전성검사 완성검사기준을 적용함

〈표 3-7〉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완성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기어,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 장치, 부력기구,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별표 1]

(2) 정기검사(재검사)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별표 2])

-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고정식 유기시설·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구분해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을 적용함

〈표 3-8〉 고정식 및 이동식·임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

검사 대항목	검사 소항목
기초, 구조부	기초, 기초연결부, 기둥, 기둥연결부, 구조물
궤도, 수로, 주로장치	궤도·수로·주로, 지지부재 및 침목
구동장치	전동장치, 감속장치, 클러치, 축 및 베어링, 축이음, 기어, 체인 및 스프로킷, 벨트 및 풀리, 로프, 컨베이어 장치, 차륜장치
유압·공압·수압 장치	유압장치, 공압장치, 수압장치, 기기 및 계기,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제동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주행 방지장치
승용물 장치	승용물 구조, 승용물 체결부, 승용물 안전장치, 승용물 기타장치
전기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전압계·전류계 표시, 배전선·배관, 피뢰설비, 조명장치, 공급전선·집전장치, 리미트 스위치·센서
운전조작장치	운전조작장치, 비상조작장치
물놀이 장치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드, 수중 모험놀이, 급수 및 배수장치, 부력기구, 착지부,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 장치·공기막 연결장치, 공기주입장치, 지지보조부재, 승강 및 하강장치
기타장치	승강장, 안전울타리, 비상구, 안전유도표시, 풍속계, 안전점검판, 기타 시설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별표 2]